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2002. 5.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군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촉진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및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중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추가함 (안 제8조제1항 제2호내지제4호)

3. 관계법령

- 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1항 제2호내지제4호를 각각 제5호내지제7호로 하며, 동조 동항에 제2호내지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가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4.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p> <p>1. (생략)</p> <p>< 신설 ></p> <p>< 신설 ></p> <p>< 신설 ></p> <p>2.~4.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사하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p> <p>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가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p> <p>4.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사하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p> <p>5.~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